

재난 상황 대응 급여비용 산정기준 예외 적용 지침(4차)

※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가 현행 기준*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적 급여제공기준에 관한 지침

*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< 지침 주요 개정 내용(3차→4차) >

-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(3p)
- 돌봄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(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) 우선적 고려,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결정
- 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
- 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.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,000원의 비용 지급

□ 목적

- 재난으로 인해 현행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

□ 기본원칙

- 재난 상황에서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

□ 적용기간

- 급여기준 예외 지침은 '25년 3월(급여제공시점 기준)부터 적용

□ 용어 정의

- (방문형 장기요양기관)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
- (입소형 장기요양기관)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

1. 피해가 발생한 방문형 장기요양기관 지원 원칙

①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특례

- (대상) 방문형 장기요양기관

*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
- (내용)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*으로 하나,

* (고시 제15조제1항)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(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)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, 임시 대피소 등을 가정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문형 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 산정

- (제출서류)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임시대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②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 업무

- (대상)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관

- (내용)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주 공간을 가정에 준하여 판단하므로,

- 사회복지사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시 대피소 등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업무 수행 가능

- (예외) 고시 제5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*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

* 수급자 사망·입원 등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, 월 중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

2. 피해가 발생한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지원 원칙

① 피해 발생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비용 지원

- (대상) 재난으로 인해 수급자를 他 기관(임시대피소, 장기요양기관, 요양병원 등)으로 대피시킨 입소형 장기요양기관*

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

※ 입소자 대피 시 지자체의 수급자 전원조치계획 및 승인(사후 승인 포함) 필요

- (내용) 원칙적으로 전원 조치된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피해가 발생한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지급

-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인정*

* 5일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정하며, 5일 이내에 복귀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

- 다만,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(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)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,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을 결정

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

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.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,000원의 비용 지급

- 체육관 등 임시대피소 등(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제외)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비용 제공

3.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지원 원칙

① 비용 지원

- (대상) 他 장기요양기관(방문형, 입소형 포함)에서 수급자를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*

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

- (내용) 피해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에게 대피 장소 등을 제공한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비용 지원*

* 5일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정하며, 5일 이내에 복귀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

- (기본비용) 전원 받은 수급자에게 대피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1인당 1일 17,000원 지급

- (급여비용)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시 급여비용 인정(기본비용 제외)

※ 청구 기간 및 청구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(건강보험공단)

- (제출서류) 지자체 전원 조치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*

* 공문 등(전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급자 명단 포함)

② 입소자 범위에 관한 특례

- (대상) 수급자를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*

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

- (내용) 전원된 수급자는 전원 받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*을 위한 입소자 범위에서 제외하되, 완전 전원의 경우 입소자에 포함

* 정원초과 감액,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등

- (제출서류) 지자체 전원 조치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*

* 공문 등(전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급자 명단 포함)

4.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 특례

- (대상) 이재민이 된 입소시설(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포함) 종사자 및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 시설장, 사회복지사(가산 적용 대상)
- (내용)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종사자가 이재민이 되어 유급휴가 처리된 경우, 5일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
- (제출서류)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(피해사실확인서 등)